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11

2020. 4. 29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기창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4월 22일

-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(제안 설명자 : 김기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,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(안 제4조)

○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 현행화(안 제5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,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시설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5조제1항은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비를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안 별표는 재난관리 4단계(예방-대비-대응-복구) 전 분야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전면 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0. 4. 6.～'20. 4. 12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,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 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・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등

충청북도 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・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・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”를 “따른 재난 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) ① 영 제74조제2호가목에서 “안전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・점검
2.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・보강
3.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항

② 영 제74조제2호가목2)에서 “경제적 사정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.

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재난관리기금의 용도(제4조 관련)

1.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 지원

가.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(충청북도 산하 각 시군구를 포함한다)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.

나.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.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지원

가.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주민(사실상 거주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.

나.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.

3.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, 물자 등의 구입 지원

4.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 지원

5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6. 제4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

7. 해외에 거주하는 충청북도 도민에 대한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지원

8.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,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

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(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한다)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(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한다)의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 및 현금·물품·장비 등 지원

9.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정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른다.

10.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<신 설>	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----- ----------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.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) ① 영 제74조제2호가목에서 “안전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・점검 2.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・보강 3.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2)에서 “경제적 사정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의 수급

	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.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<생 략>

3. "재난관리"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"안전관리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의2. ~ 5의2. <생 략>

6. "긴급구조"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,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.

7. "긴급구조기관"이란 소방청·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. 다만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.

8. ~ 9. <생 략>

9의2. "안전문화활동"이란 안전교육, 안전훈련,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.

제41조(위험구역의 설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,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
2.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3. 8. 6.>

제42조(강제대피조치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 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민법]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[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]

제4조(등록)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.

[지방재정법]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국민기초생활보장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수급권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2. ~ 9. <생 략>
10. "차상위계층"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